

제329회 임시회
2014.04.14.(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04.14.(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14년 03월 31일

다. 회부일자: 2014년 04월 02일

라. 상정일자: 2014년 04월 11일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가. 제안이유

기관시설 및 콘도시설을 신축한 기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을 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기관신설 및 콘도시설을 신축한 기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을 정함(안 제4조, 별표 3, 별표 4의3)
 - 가)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및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콘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학생은 1인당 1,000원, 교직원은 1실당 4~6인실은 20,000원, 10인실은 30,000원으로 함.
 - 나) 교직원 이외의 이용자와 해수욕장 개장기간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과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이용자에 대하여 각각 10,000원을 추가 징수함.
- 2)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 별표 4의2, 별표 7)
 - 가)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서 보령교육원이 분리되어 별도 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 사용료를 분리하여 징수함.
 - 나)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야영장이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학생야영장 사용료 징수금액을 삭제하고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 통합함.
- 3)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별표 5)
 - 가) 사용료 면제 대상에 예·체능 등 각종 대회에서 시·군·도 대표로 선발된 학생 및 지도자의 사용을 추가함.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함.

3.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정대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시설 및 콘도시설을 신축한 기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을 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분리·통합되는 기관에 관한 사항 정비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의 사용료 징수금액을 현 임해수련운영부와 동일하게 책정하되, 10인실은 10,000원을 추가 하였으며,
-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가 직속기관으로 분리되어 현재 사용료¹⁾의 변동이 없이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 사용료를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 교육지원청 소속에서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된 학생야영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 통합한 것이며,
- 사용료 면제 대상에 예·체능 등 각종 대회에서 시·군·도 대표로 선발된 학생 및 지도자 추가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1) 생활관: 학생 1,000원,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20,000원, 공공단체 및 기타 30,000원(해수욕장 개장기간 10,000원 추가-학생 제외), 교직원 콘도(5인실)는 생활관 이용료와 같음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첨부서류: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으로 하고, “별표 1에서 별표 4와”를 “별표 1에서 별표 4의3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천학생회관,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을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체능 등 각종 대회에서 시·군·도 대표로 선발된 학생 및 지도자의 사용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학생종합 수련원	수련시설		무료	무료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콘도	4~6인실	1,000원	20,000원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10인실	1,000원	30,000원	40,000원	
	강당		무료	무료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개인텐트설치		무료	무료	10,000원	◦ 1동 1박 기준

1. 본 표 중 학생,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수련원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2.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1호에 준함.
3. 대학생과 1호 및 2호 이외의 학생은 기타에 준함.

[별표 4의2]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교육정보령 교육원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교직원 콘도	5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강당		무료	무료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1. 본 표 중 학생·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교육원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별표 4의3]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교육청 제주 교육원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 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체험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교직원 콘도	4~6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10인실	-	30,000원 (40,000원)	40,000원 (50,000원)	
	다목적실		무료	무료	50,000원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1. 본 표 중 학생·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교육원장이 허가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u>지역교육청</u> 소속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 ----- -----<u>교육지원청</u> -----.</p>
<p>제4조(사용료 징수금액) ①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u>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u>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u>별표 1</u>에서 <u>별표 4</u>와 같다.</p> <p>② <u>지역교육청</u> 소속 도서관, <u>제천학생회관</u>, <u>지역교육청</u> 소속 <u>학생야영장</u>, <u>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u>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u>별표 5</u>에서 <u>별표 8</u>과 같다.</p>	<p>제4조(사용료 징수금액) ① ----- ----- ----- <u>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u>, <u>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u>, <u>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u>----- -----<u>별표 1</u>에서 <u>별표 4</u>의3과-----.</p> <p>② <u>교육지원청</u>-----<u>제천학생회관</u>, <u>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u> ----- -----.</p>
<p>제6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p> <p>1. (생략)</p> <p>2. 본청 및 직속기관, <u>지역교육청</u></p>	<p>제6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교육지원청</u></p>

현 행	개 정 안
<p>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3.~4. (생 략) <신 설></p> <p>5. (생 략) ② (생 략)</p>	<p>-----</p> <p>3.~4. (현행과 같음) 5. 예체능 등 각종 대회에서 시· 군·도 대표로 선발된 학생 및 지도자의 사용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별표 3]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 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학생종합 수련원	숙박비	진천 시설	무 료	무 료	3,000원	1인 1박 기준
		보령 시설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1학생은 1인 1박 1공무원 및 가족, 1공공단체 및 기타는 11일박 기준 ()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시설사용료 (진천시설)	무 료	무 료	50,000원	1일기준(단체) 100명 초과시 초과 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강당 사용료	무 료	무 료	50,000원	1일 기준	
	강당 냉난방비	무 료	무 료	실 비	1유류사용량에 따라 사용 당시의 유류 가격 적용 1에어컨 사용시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 금적용	
	교재발간시 교재비	무 료	무 료	실 비		

- 본 표 중 학생,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수련원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1호에 준함.
- 대학생과 1호 및 2호 이외의 학생은 기타에 준함.

[별표 3]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 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학생종합 수련원	수련시설		무 료	무 료	50,000원	1일기준(단체) 100명 초과시 초과 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콘도	4~6 인실	1,000원	20,000원	30,000원	1학생은 1인 1박 기준 1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일 1박 기준
		10 인실	1,000원	30,000원	40,000원	1수련활동 인솔교 사는 무료
	강당	무 료	무 료	50,000원	1일 기준 1냉난방에 소요된 연 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 수함	
	세미나실	무 료	무 료	50,000원		
	개인텐트설치	무 료	무 료	10,000원	11동 1박 기준	

- 본 표 중 학생,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수련원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1호에 준함.
- 대학생과 1호 및 2호 이외의 학생은 기타에 준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4의2]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기관명</th> <th colspan="2" rowspan="2">사용구분</th> <th colspan="3">징 수 액</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학생</th> <th>교직원 및 교직원가족</th> <th>공공단체 및 기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충청북도 교육정보 령 교육원</td> <td colspan="2">생활관</td> <td>1,000원</td> <td>20,000원 (30,000원)</td> <td>30,000원 (40,000원)</td> <td rowspan="3"> ◦학생은 1인 1박 기준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td> </tr> <tr> <td>교직원 콘도</td> <td>5 인실</td> <td>-</td> <td>20,000원 (30,000원)</td> <td>30,000원 (40,000원)</td> </tr> <tr> <td colspan="2">강당</td> <td>무료</td> <td>무료</td> <td>50,000원</td> <td> ◦1일 기준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td> </tr> </tbody> </table>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교육정보 령 교육원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학생은 1인 1박 기준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5 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강당		무료	무료	50,000원	◦1일 기준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교육정보 령 교육원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학생은 1인 1박 기준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5 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강당		무료	무료	50,000원		◦1일 기준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신 설>						1. 본 표 중 학생,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교육원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별표 4의3]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기관명</th> <th colspan="2" rowspan="2">사용구분</th> <th colspan="3">징 수 액</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학생</th> <th>교직원 및 교직원가족</th> <th>공공단체 및 기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충청북도 교육청 제주 교육원</td> <td colspan="2">생활관</td> <td>1,000원</td> <td>20,000원 (30,000원)</td> <td>30,000원 (40,000원)</td> <td rowspan="4"> ◦학생은 1인 1박 기준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체험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td> </tr> <tr> <td rowspan="2">교직원 콘도</td> <td>4~6 인실</td> <td>-</td> <td>20,000원 (30,000원)</td> <td>30,000원 (40,000원)</td> </tr> <tr> <td>10 인실</td> <td>-</td> <td>30,000원 (40,000원)</td> <td>40,000원 (50,000원)</td> </tr> <tr> <td colspan="2">다목적실</td> <td>무료</td> <td>무료</td> <td>50,000원</td> <td rowspan="2"> ◦1일 기준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td> </tr> <tr> <td colspan="2">세미나실</td> <td>무료</td> <td>무료</td> <td>50,000원</td> </tr> </tbody> </table>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교육청 제주 교육원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학생은 1인 1박 기준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체험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4~6 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10 인실	-	30,000원 (40,000원)	40,000원 (50,000원)	다목적실		무료	무료	50,000원	◦1일 기준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교육청 제주 교육원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학생은 1인 1박 기준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체험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4~6 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10 인실	-	30,000원 (40,000원)	40,000원 (50,000원)																																									
	다목적실		무료	무료	50,000원		◦1일 기준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신 설>						1. 본 표 중 학생,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교육원장이 허가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현행				개정안							
<p>[별표 5]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2항 관련)</p>				<p>[별표 5]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2항 관련)</p>							
기관명	구분		징수액	비고		기관명	구분		징수액	비고	
증원도서관 청원도서관 보은도서관 옥천도서관 영동도서관 진천도서관 괴산도서관 증평도서관 음성도서관 금양도서관 단양도서관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증원도서관 청원도서관 보은도서관 옥천도서관 영동도서관 진천도서관 괴산도서관 증평도서관 음성도서관 금양도서관 단양도서관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A4-B5	30원	"
	인쇄료 (디지털자료실)	후백	A3-B4	80원	1매당	증원도서관 청원도서관 보은도서관 옥천도서관 영동도서관 진천도서관 괴산도서관 증평도서관 음성도서관 금양도서관 단양도서관	인쇄료 (디지털자료실)	후백	A3-B4	80원	1매당
			A4-B5	50원	"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칼라	A4-B5	500원	"
시설사용료 (회의실, 전시실 등)			20,000원	1일기준	시설사용료 (회의실, 전시실 등)			20,000원	1일기준		
<p>[별표 7]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2항 관련)</p>				<p><삭제></p>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중원학생야영장 제천학생야영장 옥천학생야영장 영동학생야영장 청원학생야영장	시설 사용료	무료	무료	50,000원	*1일기준(단체) *100명 초과시 초과 하는 50명당 3000원씩 가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표 중 학생,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야영장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1호에 준함. 대학생과 1호 및 2호 이외의 학생은 기타에 준함.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3.] [법률 제12394호, 2014.2.13.]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안전행정부 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12.30>

□ 지방자치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4.7.1. 시행예정,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제3장 직속기관

제5절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수련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에 둔다. 다만, 수련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진여울길 65,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도원로 153-3,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에 둔다.

제12절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

제41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련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이하 “보령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령교육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에 둔다.

제13절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제4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이하 “제주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주교육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팍지리 1622-61에 둔다.

제4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47조(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를 둔다.